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정이유

-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운영 효율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 및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위원회 기능활성화 도모와 자율적 운영기반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주민자치센터 운영】

- 가. 자치센터의 읍·면·동사무소별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제4조)
- 나. 주민자치기능 및 지역사회진흥기능의 우선적 수행(제5조)
- 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분담,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제7조)
- 라. 사용료등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주체·관리·집행요령 등(제10조)
- 마.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제11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 바. 위원회에 일부 의결·집행기능 부여, 자치기능 수행관련 토론회 확대 등(제15조, 제16조)

사. 고문제도, 위원위촉 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주요인적사항 공개 등(제17조)

아.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제18조)

자. 위원 해촉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제20조)

차. 현 주민자치위원 임기보장,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다른 경우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변경 등(부칙)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동 조례개정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제1항과 동 법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사무)에 의거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2001년 10월10일 조례 제409호로 제정된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다 현실에 부합하면서 그 운영을 내실 있게 활성화할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고시키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이에 따른 세부개정을 위해 경기도에서 시달된 전문개정 준칙안에 따라 조례안이 마련됨으로써 법령적합성에 있어 특별한 미비점이 없다고 사료됨.

地方自治法[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69호]

第3節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

第8條 (事務處理의 基本原則)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住民의 편의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地方自治法施行令[일부개정 2000.7.1 대통령령 제16879호]

제1장 總 則

第8條 (地方自治團體의 種類別 事務)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관련 별표1)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다.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시·도사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시·군·자치구사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나. 내용타당성

○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장별, 조항별로 살펴보면

【제1장 총칙중】

제1조(목적)의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외에 동법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사무)를 추가하였으며

제2조(정의)에서 단체의 범주에 “각종 민간단체”를 삽입하여 “NGO등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제2장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제4조(설치 등) 제2항에 자치센터의 명칭을 “○○읍·면·동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등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제5조(기능) 제1항에서 현행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 중 주민자치기능을 맨 앞에 두어 주민자치기능을 우선토록 하였고,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에서 시설 및 프로그램의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읍·면·동장이 정하도록 해 자율성을 높이고, 센터시설의 설치·시장이 하도록 설치 주체를 명확히 정하고 있음.

제7조(운영)에는 소속공무원과 위원회 위원·자원봉사자등이 분담수행토록하여 민간인의 센터운영 참여를 유도하고,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했으며,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과 관계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이 내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음.

제10조(사용료등) 규정에서 읍·면·동장이 사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읍·면·동장은 센터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수강료는 위원회가 징수토록 해 징수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등록장애인등에 대한 수강료 50%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제11조(이용 등)에서는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이용중 신체상 피해를 대비하여 시설보험등에 가입토록 조항을 신설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제17조(구성 등) 인원범위를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던 것을 하한선을 없애고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두며 이중 시의원은 그 직위에 있는 동안 관할 읍·면·동 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시의원의 고문위촉은 임의규정으로서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제17조(구성 등)제3항은 자치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을 고루 위촉하되 특정분야인원이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총인원의 3분의1 이상을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고,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촉전원의 주요인적사항을 매년초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하여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임원과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개정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토록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에서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센터관리인력의 부족현상을 보완했고, 운영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직무를 해태했을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21조(회의) 조항에서 고문은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도록 하고, 읍·면·동장은 회의에 참석해 센터운영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다수의 각계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서 내용의 현실 타당성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